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9 선고 2020나665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리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령

변 론 종 결 2021. 4. 28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4. 21. 선고 2019가단279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위적으로, C 및 D과 피고 사이에 광주시 E 대 330㎡에 관하여 2014. 5. 23.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,653,6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
지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4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의 ‘3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’ 중 ‘나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’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사실상 G의 소유였으므로, 위 매매계약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G의 책임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이다. 또한, G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G의 채무 문제로 소유 명의만을 2007. 7. 9.자 매매계약을 통해 C 및 D에게,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각 순차로 이전한 것인바, 이는 전형적인 가족 간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위 각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, G는 망 F 혹은 그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순차로 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,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, 채무자 G 및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나. 판단

먼저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, 달리 G가 위 매매계약 체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G의 소유로서 원고를 비롯한 G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(한편 원고는 F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단순히 위와 같이 주장한 것 외에 구체적 사망 및 상속의 일시, 상속의 관계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바,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G임을 인정할 수 없다).

다음으로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 혹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위와 같은 권리가 G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,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도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욱, 판사 남기정, 판사 김태형